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 · 답변

-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2023. 10. 06.

**국 토 교 통 부
도로투자지원과**

□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1	p.11 ~13	제4조 사업의 범위 (2) 사업구간 ① 본사업은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동부간선 접속)/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수도권제1순환)에서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수도권제2순환)/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국도3호 선대체우회도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등을 건설하는 사업임([본사업구간 도면] 참조). * 본선 시점: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동부간선 접속) 본선 종점: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 ... ④ 사업제안자는 사업구간 인근 의정부시 및 양주시에 위치한 <u>북한산 국립공원의 보존가치를 고려하여 공원 저축을 최소화하도록 노선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u> ⑤ 사업제안자는 수도권제1순환도로 사패산터널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u>제안 노선이 긴급수송로 또는 우회도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u> • 본 사업이 북한산 국립공원의 저축을 최소화 하고 사패산 터널의 긴급수송로 또는 우회로 기능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본선과 지선이 접속하는 지점에 한하여 본선과 본선을 연결로(분기점)로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하여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본선은 시점부터 종점까지 연속적으로 제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공고문 제5조 성과요구 수준 (4)도로설계기준 등을 고려해 계획하여야 합니다.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2	p.14 제4조 사업의 범위 (4) 추정 건설사업비 및 추정 총사업비 ② 주무관청이 추정한 보상비는 2,721억원(국공유지 포함)으로 보상비를 포함한 추정 총사업비는 8,607억원(2020년 06월 30일 기준)임. · 주무관청 추정 보상비(2,721억원)는 국유지를 보상비에서 제외하고, 공유지는 보상배율 1.0배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① 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② 「도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 중 행정재산(도로, 하천, 철도 등)은 보상비 산정시 제외하고, 일반재산(전, 답, 잡종지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총괄지침(기획재정부, 2022.12)을 적용하여 보상비를 산정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추정보상비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철도부문 연구(KDI, 2022.12) 등을 바탕으로, 국유지 면적은 제외하고 사유지와 공유지 면적에 개별공시지가와 보상배율을 적용하되, 공유지 면적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만을 적용하고 보상배율은 배제(1.0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사업제안자는 이를 참고하여 보상비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3	p.19 제7조 사업제안자의 자격 (2) 사업제안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⑥ 사업제안자가 주무관청에 건설보조금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제안서의 공정한 비교평가를 위해 자기자본이 전액 투입된 후 건설보조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건설보조금은 가격산출기준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특정연도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본사업시설을 준공할 때까지 공정률에 따라 안분되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함. 다만, 실제 보조금 지급일정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 건설보조금 투입이 개시되는 분기가 자기자본이 전액 투입 완료되는 해당 분기인지, 자기자본이 전액 투입 완료되는 해당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인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건설보조금 투입이 개시되는 분기는 자기자본이 전액 투입 완료되는 해당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입니다.	
4	p.19 제7조 사업제안자의 자격 (2) 사업제안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임의 양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⑦ 사업제안자는 본사업에 참여하는 출자자 가운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1인의 출자자를 본사업 사업제안자의 <u>대표자</u>(이하 ‘대표자’라 함)로 지정하고, 대표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협상, 실시계획 수립을 포함한 본사업과 관련된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대표자의 출자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전략적투자자를 대표자로 지정할 경우 전략적투자자(운영출자자 제외) 중에 출자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함. - 재무적투자자를 대표자로 지정할 경우 설립예정 또는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재무적투자자들 중에 출자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집합투자기구는 본사업의 대표자가 될 수 없음). - 기 지정된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제안자(우선협상대상자, 사업시행자 포함)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1단계 평가 사전적격심사(PQ) 서류에 대표자 지정과 관련한 양식을 사업제안자가 임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5	p.32 제11조 위험의 분담 2. 투자위험의 분담 및 환수 (3) 매년도 투자위험분담기준금 및 환수기준금은 다음 방식으로 산정함.	○ 질의에서 언급하신 위험보상율에 해당하는 가산금리($\alpha\%$)를 의미합니다.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r_d: 보전대상 민간투자비 적용 협약 차입금리 $(= r_f + \text{위험보상율})$ • 상기 위험보상율은 최초제안자가 최초제안시 제시한 선순위 금리 ‘국고채(5년) + a%(가산금리, Spread)’의 a%를 의미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 최초제안자 보안사항으로 a%로 표시함		
6	p.48 제6장 최초제안자 주요 제안내용 1. 사업제안 개요 (7) 출자자 현황: (가칭)미래에셋서울양주펀드, 포스코건설, 대보건설, 금광기업 • 본 사업의 최초제안을 위한 사업제안서류 제출(문서번호:서울양주 2020-0001, 2020.08.31.) 당시에는 본 사업 사업시행자 (가칭)서울양주고속도로주식회사의 대표자가 ‘(주)포스코건설’이었으나, 2023년 4월 4일자로 본 사업 대표자 ‘(주)포스코건설’의 사명이 ‘(주)포스코이앤씨’로 변경되어 주무관청에 공문으로 송부(문서번호:서울양주 2023-01, 서울~양주 고속도로 대표회사 명칭변경 알림의 건, 2023.04.21.)한 바 있습니다. - 하지만 제3자 제안 재공고문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바, 향후 본 사업 진행상에 발생하는 모든 서류(제안서류 및 공문 등)에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주)포스코이앤씨’로 표기하여 작성 및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이미 확인된 사항으로 추가 증빙 불필요합니다.	
7	p.51 2. 사업제안서의 규격 및 글자크기 (1) 사업제안서는 3홀(hole) 좌철 바인더 또는 제본 형태로 제작함. (2)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는 A4 용지 양면에 12point의 글자 크기를 사용하고, 줄 간격은 160%로 하여 분명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함. (3) 재무분석 보고서 및 설계도면은 A3 용지를 사용할 수 있음. (4) 지도, 도면 등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 본보고서는 제2권 기술부문, 제3권 수요부문, 제4권 가격부문을 의미합니다. ○ 분량제한이 있는 보고서에 A4 용지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A4 용지 규격으로 환산(A4 용지 면적으로 나누어 올림)하여 쪽수를 산정합니다.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크기로 접거나 별도로 제출함. (5) <u>본보고서 제한 쪽수, 사업제안서의 규격 등을 위반할 경우 사업제안서평가단의 논의를 거쳐 20점 이내의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u> · 상기 (5)의 본보고서의 범위가 제3자 제안 재공고문 58페이지 표에 제시된 2단계 평가 서류 중 ‘제2권 기술부문’, ‘제3권 수요부문’, ‘제4권 가격부문’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 분량제한이 있는 본 보고서의 경우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1페이지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A4로 환산하여 산정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본보고서에 위치도, 노선도, 조감도 등을 삽입할 경우, 쪽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위치도, 노선도, 조감도는 제3자 제안공고(제2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간지, 목차, 조건표, 공백 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쪽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8	p.52 제27조 사업제안서 기본조건 (1) 가격산출기준 : 가격산출은 (2020년6월30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제출함. 다만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기준시점을 정하여 조정 또는 재산정할 수 있음. ... (4) 물가변동률 : 연 2%를 기준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적용률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 본 사업 공고일(2023년 8월 4일)을 기준으로 가격 산출 후 가격 산출기준일(2020년 6월 30일)로 환산하여 제안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격산출기준일의 가격 적용을 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가격산출기준일의 가격을 적용하여 가격산출 시, 가격산출일기준의 가격이 없는 신규항목은 본 사업 공고일 기준을 기준으로 사업비 산정 후 가격산출기준일로 환산하여 산정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본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된 사업비를 가격산출기준일인 2020년 6월 30일로 조정시, 제3자 제안 재공고에서 제시한 물가변동률(2%)과 한국은행 또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가격기준일(2020년 6월 30일) 가격이 있을 경우는 그 가격을, 없을 경우는 공고일 기준의 사업비를 물가변동률(2%)을 적용하여 과거 가격기준일(2020년 6월 30일)의 가격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9	p.57 제28조 총사업비·운영비 및 운영수입 등의 산정 (10) 초과수익 환수금($\Sigma G R_i$)은 매년도 실제 운영수입에서 변동 운영비를 차감한 금액이 주무관청 환수기준금(=매년도 투자위험분담기준금 + 매년도 미보전대상 민간투자비 미회수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무관청에서 일정비율로 환수하는 금액으로 산정함. ③ 보전대상 민간투자비의 기준차입금리는 지표금리(공고일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수익률(최종호가수익률 기준) 단순평균값)과 위험보상율로 하며, 위험보상율은 사업제안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실시협약에서 확정하도록 함. · 지표금리(공고일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수익률(최종호가수익률 기준) 단순평균값) 계산 시 소수점 반올림 기준(예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질의 드립니다.	○ 지표금리는 기준시점의 값은 반올림 없이 그대로 사용하되, 최종 평균값을 구하는 단계에서 계산된 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정합니다.	
10	p.58 p.110 제29조 사업제안서 구성 및 분량 (2) 사업제안서 중 본보고서, 부속서류, 사전적격심사 서류의 원본은 표지에 사업제안자의 명칭을 기재하고, <u>대표자(사업제안자가 법인일 경우는 동법인의 대표자, 설립예정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회사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u> 하여야 하며, 매 쪽마다 간인을 하여야 함. <양식 3> 서약서 1. 본 법인은 사업제안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사업제안자가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사업제안서 표지에 사업제안	○ 사업제안자가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사업제안서 표지에 사업제안자의 명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 기재 후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면 됩니다. ○ 사업제안서 사본(표지 포함)에는 사업제안자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자의 명칭을 기재하고, 추가로 대표회사의 ‘대표이사명’을 표시하고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상기 <양식3> 서약서 내용과 같이 본보고서, 부속서류, 사전적격심사 서류의 표지에 사업제안자의 명칭을 기재하는 등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11	p.59 p.63 제29조 사업제안서 구성 및 분량 (3) 사업제안서 이외에 본사업과 관련된 별도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본 1부 및 사본 10부를 따로 제출하여야 함. 단, 감사보고서(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재무재표 증명원)는 최근 3개년도의 연차별 보고서를 각 1부씩 제출함. 제8장 사전적격심사 서류 제33조 사업수행능력 (3) 재무능력 ④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간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감사보고서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도 감사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만약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면,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출력한 감사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각 회사의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감사보고서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도 감사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되,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1부 제출하면 됩니다.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12	p.57 p.58 p.62	제29조 사업제안서 구성 및 분량 (1) 사업제안서의 제출부수는 아래와 같으며, 제출자료가 누락 또는 미흡할 경우에는 실격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음.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평가구분</th><th rowspan="2">사업제안 서류</th><th rowspan="2">형식 및 분량</th><th colspan="2">제출부수</th></tr> <tr> <th>원 본</th><th>사 본</th></tr> </thead> <tbody> <tr> <td>1단계평가</td><td>사전적격심사(PQ) 서류</td><td>-</td><td>1부</td><td>10부</td></tr> </tbody> </table> 제8장 사전적격심사 서류 제32조 출자자의 구성 및 현황 (2) 출자자의 연혁은 <양식 7>에 따라 작성함. ① 출자자의 연혁은 법인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되, <u>증빙서류</u>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류로 첨부함. 1단계 평가 사전적격심사(PQ) 서류와 관련하여 사실확인 등을 위한 증명 또는 증빙서류를 별권의 형태(예로 부속서류)로 제출하여도 무방한지, 무방하다면 1단계 평가 사전적격심사(PQ)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1단계 평가 사전적격심사(PQ) 서류의 별권의 형태(예로 부속서류)가 제출이 가능한 경우, '형식 및 분량, 제출부수'는 2단계 평가 제7권 부속서류와 동일하게 제출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평가구분	사업제안 서류	형식 및 분량	제출부수		원 본	사 본	1단계평가	사전적격심사(PQ) 서류	-	1부	10부	○ 사전적격심사서류와 관련하여, 사실확인 등을 위한 증명 또는 증빙서류를 별권의 형태로 제출 가능하며, 원본 1부, 사본 10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평가구분	사업제안 서류	형식 및 분량				제출부수										
			원 본	사 본												
1단계평가	사전적격심사(PQ) 서류	-	1부	10부												
13	p.51 p.57 p.58 p.72	제7장 사업제안서 작성 일반 제26조 사업제안서 작성의 일반 지침 1. 사업제안서 작성의 제반 사항 (5) 사업제안서의 작성은 한글 프로그램과 호환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수치 자료 분석은 엑셀 등 스프레드 쉬트를	○ 제3자 제안공고 내용 중 제출하도록 언급되어 있는 전산자료/USB는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질의하신 '제36조 가격부문 평가서류 작성'의 (5)에 해당하는 내용은 재무모델내 삽입하여 제출합니다.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사업제안서를 작성할 때 사용된 수치자료 및 설계도서는 USB로 제출하여야 함. 제29조 사업제안서 구성 및 분량 (1) 사업제안서의 제출부수는 아래와 같으며, 제출자료가 누락 또는 미흡할 경우에는 실격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음.<table><tr><th rowspan="2">평가구분</th><th rowspan="2">사업제안 서류</th><th rowspan="2">형식 및 분량</th><th colspan="2">제출부수</th></tr><tr><th>원 본</th><th>사 본</th></tr></table> 제36조 가격 부문 평가서류 작성 (5) 재정지원금 규모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을 <양식 27>에 따라 작성하며, 한글, 엑셀 등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여 전산 자료로 작성한 후 제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서를 작성할 때 사용된 수치자료 및 설계도서는 USB로 제출하여야 함’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제3자 제안 재공고문 58페이지 ‘사업제안서 제출 서류’에는 ‘구조 및 수리계산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재무모델’ 3가지 서류만 USB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3가지 서류 외 사업제안서류는 USB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평가구분	사업제안 서류	형식 및 분량	제출부수		원 본	사 본	○ 사업제안서를 작성할 때 사용된 수치자료 및 설계도서는 USB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평가구분	사업제안 서류	형식 및 분량				제출부수					
			원 본	사 본							
14	p.71	제35조 수요 부문 평가서류 작성 (7) 교통수요 추정결과를 제시함. ④ 사업제안자는 기준통행료 및 기준통행료의 1.05배의 통행요금 징수에 대한 교통수요와 본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통행료 및 교통수요에 대한 요금탄력도 등의 분석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추정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유료도로법」 등을 고려하여, 사업제안자가 적정요금체계를 전제하여 제안하길 바랍니다.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 본사업노선 인근 유료도로나 민자도로의 경우 각 도로의 관리운영기간을 고려하여 필요시 통행요금 변경사항을 적용하여야 함. · 인근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 종료 이후 요금징수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어, 관리운영 종료 이후의 민자도로의 요금징수 계획을 한국도로공사 통합요금 부과체계(고속국도 입구요금소에서 출구요금소 통행시 기본요금 1회 부과) 전제하에 제안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15	p.74 , p.75 제37조 설계도서 (3) 용지확보계획서의 목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함. ① 보상비 산정기준 및 방법 - 사업의 개요, 사업노선의 입지 및 현황을 고려하여 토지보상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 2022.12.)”을 참고하여 토지보상비는 최근 개별공시지가 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본사업에 적용할 토지보상비 산정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토지보상비, 지장물 보상비, 이주대책비 등의 보상비 산출방법을 기술함. ④ 예상보상비 산정 - 보상비 집계표 :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용지보상비는 편입면적을 계산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 2022.12.)”을 참고하여 산출하며 노선이 지나는 곳에 있는 지장물이나 각종시설에 대한 보상비 등은 별도 산출하여 이를 보상비에 포함함. - 필지별 내역서 : 정확한 보상비 산정을 도모하기 위해 “예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총괄지침(기획재정부, 2022.12)을 참고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 주변 보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적용합니다.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 2022.12.)에 따라 개별필지에 대한 보상비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지번, 지목, 편입면적, 공시지가, 보상비 등이 수록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편입지역과 중점검토지역의 세부검토 자료를 포함하여야 함.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개별용지에 대해 사업자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16	p.78 , p.79 제42조 제출서류 심사 (2) 사업제안자는 다음 ① ~ ③의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고, 각 제출서류는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③ 출자자의 구성<양식 5>, 출자자 현황<양식 6>, 출자자 연혁<양식 7>, 출자자의 주주현황<양식 8>, 출자자의 손익계산서<양식 9>, 출자자의 재무상태표<양식 9-1>, 투자확약서 등(<양식 16-1~16-8>, 조건부 대출확약서 등(<양식 17-1~17-2>) - 차입예정금액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제출하고, 타인자본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타인자본’ 전액을 ‘차입예정금액’으로 계획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타인자본’ 전액을 차입예정금액으로 계획할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17	p.81 제43조 사업수행능력 평가 2. 설계능력(D) (2) (1)의 ① 및 ②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③ <u>설계회사가 공동도급 형태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20% 이상의 비율로 참여한 설계용역만을 인정하되, 해당 비율을 적용한 연장을 실적으로 인정하며, 사업제안자(컨소시엄)에 다수의 설계회사가 참여하는 경우 참여한 설계회사들의 실적을 합산 가능함.</u> ④ <u>설계회사가 컨소시엄의 형태로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20% 이상의 비율로 참여한 설계용역만을 인정하되, 동 설계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비율의 전체 합계가 100% 이상이어야 함.</u> · 실시설계용역 실적 산정과 관련하여 ③항의 “다수의 설계회사가 참여하는 경우 참여한 설계회사들의 실적을 합산 가능”과 ④항 “동 설계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비율의 전체 합계가 100% 이상이어야 함”이 서로 배치되는 평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④항에는 다수의 설계사 참여시 모든 설계사가 각각 100%이상의 참여지분이 필요(실적합산이 불가하여 ③항과 배치됨) 사업제안자(컨소시엄)에 다수의 설계회사가 참여할 경우 참여한 설계회사들이 공동도급 형태로 20% 이상 비율로 참여한 설계용역 비율 전체 합계가 100%이상인 경우 설계능력을 인정받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③항의 ‘설계회사가 공동도급 형태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와 ④항의 ‘설계회사가 컨소시엄의 형태로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때’의 의미가 서로 다른 의미인지 질의 드립니다.	○ ③은 설계회사가 공동도급의 형태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20% 이상의 비율로 참여한 설계용역을 인정하되, 사업제안자(컨소시엄)에 다수의 설계회사가 참여하는 경우 설계회사들의 실적연장*을 합산한 것이 1,000m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예시) A사가 2km 터널공사에 30% 비율로 참여시 600m인정 ○ 다만, 설계회사가 민간투자사업 등에 컨소시엄(사업제안자로 참여) 형태로 수행한 경우(④)의 실적은 해당 설계사가 20% 이상의 비율로 참여한 설계용역만을 인정하되, 해당 설계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비율의 합계가 100%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18	p.82 제43조 사업수행능력 평가 3. 시공능력(B) (1) 본사업에 <u>교량 또는 터널 공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터널 또는 교량은 별표 1 “공종별 동일공사의 범위”에서 정한 공사실적을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함.</u> <양식 13~14, 별표 1> (2) 상기 (1)의 조건을 만족하는 동시에, 다음 ① 또는 ② 중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시공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① 사업제안자 또는 그 출자자가 시공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2023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중 토목건축공사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사업제안자 또는 출자자가 본사업에서 도급받는 도급예정액의 1.0배 이상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시공회사는 <양식 15>에 따라 시공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교량 또는 터널 공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3. 시공능력(B)의 (1)’ 조항을 충족하기 위한 공사실적은 전체 공사의 최대 시공지분을 갖는 시공회사의 실적이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공구 분할시 각 공구에 교량 또는 터널 공종을 실제 시공하기로 예정된 시공회사(각 공구별 대표 시공회사)의 실적이 만족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공사 구간을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 각 구간 공사에 참여하는 시공회사는 해당구간의 특성에 따른 시공능력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9	p.10 2 제48조 가격부문 평가항목 1. 통행료율(200점) (3) 통행료율 산정기준	○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방식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5-153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행요금 = 기본요금 + 주행요금(주행거리×km당 주행요금 단가)	)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① 통행료를 산정의 기준통행료 및 제안통행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됨. - 기준통행료 $P'_{ij} = 900 + 44.3 \times [l_{ij}^4 \times 1.0 + l_{ij}^6 \times 1.2]$ P'_{ij} : 구간 i-j의 기준통행요금(1종기준) l_{ij}^4, l_{ij}^6 : 4차로와 6차로 각각의 연장(6차로 이상은 20% 할증)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기준 산정시, 2차로 구간에는 50% 할인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본 사업 구간 중 본선이외의 구간에 2차로가 계획될 경우를 감안하여 기준통행료 산정식을 $P'_{ij} = 900 + 44.3 \times [l_{ij}^2 \times 0.5 + l_{ij}^4 \times 1.0 + l_{ij}^6 \times 1.2]$로 반영하여 산정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기본요금 : 폐쇄식 900원/대, 개방식 720원/대 ※ 2차로 구간 : 50% 할인 ○ km당 주행요금 단가(4차로 기준) <table><tr><th>구 분</th><th>대 상 차 량</th><th>주행요금 (원/km)</th></tr><tr><td>1종 (소형차)</td><td>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td><td>44.3(1.00)</td></tr><tr><td>2종 (중형차)</td><td>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td><td>45.2(1.02)</td></tr><tr><td>3종 (대형차)</td><td>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td><td>47.0(1.06)</td></tr><tr><td>4종 (대형화물차)</td><td>3축 대형화물차</td><td>62.9(1.42)</td></tr><tr><td>5종 (특수화물차)</td><td>4축이상 특수화물차</td><td>74.4(1.68)</td></tr></table> ※ 2차로 구간 : 50% 할인, 다차로 구간(6차로 이상) : 20% 할증	구 분	대 상 차 량	주행요금 (원/km)	1종 (소형차)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44.3(1.00)	2종 (중형차)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45.2(1.02)	3종 (대형차)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47.0(1.06)	4종 (대형화물차)	3축 대형화물차	62.9(1.42)	5종 (특수화물차)	4축이상 특수화물차	74.4(1.68)	
구 분	대 상 차 량	주행요금 (원/km)																				
1종 (소형차)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44.3(1.00)																				
2종 (중형차)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45.2(1.02)																				
3종 (대형차)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47.0(1.06)																				
4종 (대형화물차)	3축 대형화물차	62.9(1.42)																				
5종 (특수화물차)	4축이상 특수화물차	74.4(1.68)																				
20	p.10 2, p.10 3	제48조 가격부문 평가항목 2. 통행료를(200점) (3) 통행료를 산정기준 ① 통행료를 산정의 기준통행료 및 제안통행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됨.	○ 기준통행료 대비 1.05배로 제한한 제안통행료는 전체 거리에 대한 거리가중제안통행료를 의미하며, 구간별로 별도로 제한한 사항은 없습니다.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 제안통행료는 기준통행료 대비한 배수를 적용하되 1.05배를 초과하지 않게 제시해야 함. ③ 통행료율 산정식 - 통행료율 $\frac{\text{통행료율}}{\text{(X)}} = \frac{[\sum (P_{ij} \times L_{ij}) / \sum L_{ij}] : \text{거리가중 제안통행료(VAT 포함)}}{[\sum (P'_{ij} \times L_{ij}) / \sum L_{ij}] : \text{거리가중 기준통행료}}$ • 제안통행료 산정 시, 모든 구간에서 기준통행료 대비 동일한 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구간별로 상이한 배수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만약 구간별 상이한 배수 적용이 가능하다면 ‘기준통행료 대비 1.0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전체 거리에 대한 거리가중 제안통행료(③통행료율 산정식에 제시된 통행료율(X))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각각의 구간별 제안통행료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21	p.10 6 <양식 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③ 대표자/대표출자자 • 상기 양식의 ‘대표자/대표출자자’는 제3자 제안 재공고문 3페이지, “(15) 대표자 : 사업제안자의 출자자를 대표하는 1인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로서, 사업제안서 제출, 협상, 실시계획 수립을 포함한 본사업 시행과 관련한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의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양식 1>의 ③에서의 대표자/대표출자자는 제3자 제안공고문 3페이지의 ‘(15)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22	p.11 7, p.11 8	<양식 9>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양식 9-1> 출자자의 재무상태표 ·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작성기준은 ‘별도 재무제표’인지 또는 ‘연결 재무제표’인지 질의 드립니다. ·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상기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손익계산서 과목 중 일부항목(경상이익, 특별이익, 특별손실)이 없는 경우 칸을 삭제 하고 제출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는 개별 재무제표를 의미하며 감사보고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 과목 중 일부항목이 없는 경우도 감사보고서 상 제시된 손익계산서와 동일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3	p.12 0 p.12 3 p.12 4 p.12 5	<양식 10-1> 실시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용역 낙찰실적증명서 <양식 13> 시공실적 증명서 <양식 14> 시공실적(기성율) 증명서 · “<양식 10-1> 실시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용역 낙찰실적증명서, <양식 13> 시공실적 증명서, <양식 14> 시공실적(기성율) 증명서” 양식과 발주처(발급기관) 양식이 상이할 경우(발주처의 전자 준공실적 증명서 발급시스템 활용으로 전자 준공/시공실적증명서 포함) 제출 및 인정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양식 10> 실시설계용역 수행실적, <양식 10-1> 실시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용역 낙찰실적증명서, <양식 13> 시공실적 증명서, <양식 14> 시공실적(기성율) 증명서” 서류관련 증명 또는 증빙서류(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등)는 1단계 평가 사전적격심사(PQ) 서류와 관련하여 별권의 형태(예로 부속서류)로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발주기관(발급기관)의 ‘전자 준공실적 증명서 발급시스템 활용을 통한 준공/시공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양식에 있는 내용은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질의하신 해당 양식의 별권 제출 가능합니다.			
24	p.12 7	(별표 1) 공종별 동일공사의 범위 <table><tr><td>공 종</td><td>등 급</td><td>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준공실적</td></tr></table>	공 종	등 급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준공실적	○ (별표1) 의 교량 등급은 위부터 순서대로 A,B,C,D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공 종	등 급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준공실적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table><tr><td rowspan="5">교 럡</td><td>- 현수교, 사장교 - 경간 200m 이상 포함 교량</td><td>- 길이200m 이상 A등급 교량 * 단 현수교, 사장교는 100m 이상</td></tr><tr><td>- 연도교, 연육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 -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포함 교량</td><td>- 길이 200m 이상 A, B등급 교량 * 단 현수교, 사장교는 100m 이상</td></tr><tr><td>- 경간길이 50m 이상 포함 교량, 연장 1,000m 이상의 일반 교량 (경간 10m 이상)</td><td>- 길이 100m 이상 A, B, C등급 교량</td></tr><tr><td>- 5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 이상)</td><td>- 길이 100m 이상 A, B, C, D등급 교량</td></tr><tr><td></td><td>* 최소규모: 최소교폭 7.2m 이상 단위교량으로서 교통시설만 인정</td></tr><tr><td>터 널</td><td></td><td>단일구조물(체)로써 1,000m 이상 도로 터널 공사(개착식 터널 제외) *최소규모: 2차로 이상의 단위터널(폭7.2m)</td></tr></table> · ‘(별표 1) 공종별 동일공사 범위’에 교량 공종 ‘등급’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교량등급 확인이 어렵습니다. <table><tr><td>A등급</td><td>- 현수교, 사장교 - 경간 200m 이상 포함 교량</td></tr><tr><td>B등급</td><td>- 연도교, 연육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 -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포함 교량</td></tr><tr><td>C등급</td><td>- 경간길이 50m 이상 포함 교량, 연장 1,000m 이상의 일반 교량(경간 10m 이상)</td></tr><tr><td>D등급</td><td>- 5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 이상)</td></tr></table> 사업제안서 작성시 교량등급에 대해 상기 표와 같이 적용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시공능력 평가 기준인 (별표1) 중 교량실적을 충족하기 위한 실적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사업제안자의 설계내용에 D등급 교량만 있을 경우 D등급 교량실적만 제출하면 상기 시공능력을 충족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교 럡	- 현수교, 사장교 - 경간 200m 이상 포함 교량	- 길이200m 이상 A등급 교량 * 단 현수교, 사장교는 100m 이상	- 연도교, 연육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 -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포함 교량	- 길이 200m 이상 A, B등급 교량 * 단 현수교, 사장교는 100m 이상	- 경간길이 50m 이상 포함 교량, 연장 1,000m 이상의 일반 교량 (경간 10m 이상)	- 길이 100m 이상 A, B, C등급 교량	- 5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 이상)	- 길이 100m 이상 A, B, C, D등급 교량		* 최소규모: 최소교폭 7.2m 이상 단위교량으로서 교통시설만 인정	터 널		단일구조물(체)로써 1,000m 이상 도로 터널 공사(개착식 터널 제외) *최소규모: 2차로 이상의 단위터널(폭7.2m)	A등급	- 현수교, 사장교 - 경간 200m 이상 포함 교량	B등급	- 연도교, 연육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 -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포함 교량	C등급	- 경간길이 50m 이상 포함 교량, 연장 1,000m 이상의 일반 교량(경간 10m 이상)	D등급	- 5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 이상)	<table><tr><td>A등급</td><td>- 현수교, 사장교 - 경간 200m 이상 포함 교량</td></tr><tr><td>B등급</td><td>- 연도교, 연육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 -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포함 교량</td></tr><tr><td>C등급</td><td>- 경간길이 50m 이상 포함 교량, 연장 1,000m 이상의 일반 교량(경간 10m 이상)</td></tr><tr><td>D등급</td><td>- 5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 이상)</td></tr></table> ○ 사업제안자의 설계내용에 있는 교량의 등급에 해당하는 실적만 제출하면 됩니다.	A등급	- 현수교, 사장교 - 경간 200m 이상 포함 교량	B등급	- 연도교, 연육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 -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포함 교량	C등급	- 경간길이 50m 이상 포함 교량, 연장 1,000m 이상의 일반 교량(경간 10m 이상)	D등급	- 5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 이상)	
교 럡	- 현수교, 사장교 - 경간 200m 이상 포함 교량	- 길이200m 이상 A등급 교량 * 단 현수교, 사장교는 100m 이상																																
	- 연도교, 연육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 -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포함 교량	- 길이 200m 이상 A, B등급 교량 * 단 현수교, 사장교는 100m 이상																																
	- 경간길이 50m 이상 포함 교량, 연장 1,000m 이상의 일반 교량 (경간 10m 이상)	- 길이 100m 이상 A, B, C등급 교량																																
	- 5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 이상)	- 길이 100m 이상 A, B, C, D등급 교량																																
		* 최소규모: 최소교폭 7.2m 이상 단위교량으로서 교통시설만 인정																																
터 널		단일구조물(체)로써 1,000m 이상 도로 터널 공사(개착식 터널 제외) *최소규모: 2차로 이상의 단위터널(폭7.2m)																																
A등급	- 현수교, 사장교 - 경간 200m 이상 포함 교량																																	
B등급	- 연도교, 연육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 -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포함 교량																																	
C등급	- 경간길이 50m 이상 포함 교량, 연장 1,000m 이상의 일반 교량(경간 10m 이상)																																	
D등급	- 5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 이상)																																	
A등급	- 현수교, 사장교 - 경간 200m 이상 포함 교량																																	
B등급	- 연도교, 연육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 -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포함 교량																																	
C등급	- 경간길이 50m 이상 포함 교량, 연장 1,000m 이상의 일반 교량(경간 10m 이상)																																	
D등급	- 5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 이상)																																	
25	p.12 3,	<양식 13> 시공실적 증명서 주) 6.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p.12 4, p.12 8	함. (별표 2)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2.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목록 다.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시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제출 · ‘주) 6.의 간인(서명)’은 시공능력을 인정받고자 ‘시공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는 ‘해당 시공회사의 간인(서명)’을 의미하는 것인지, 공동도급실적의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를 사본 제출할 경우에도 원본대조필은 시공능력을 인정받고자 ‘시공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는 ‘해당 시공회사의 원본대조필’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해당시공회사의 간인(서명)을 의미합니다. ○ 공동도급실적의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를 사본 제출하는 경우 발급기관의 ‘원본대조필’을 의미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시공회사(대표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26	p.12 3, p.12 4, p.12 8, p.12 9	<양식 13> 시공실적 증명서 (별표 2)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3. 시공실적 심사기준 나. 시공실적 내용 2)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가) 공동이행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규모 및 금액의 실적인정은 시공비율만큼 실적으로 인정함. 다만, 당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회사 실적으로 인정하되, 실적증명서에 공동수급체별 시공내용이 기재되고 구성원 전체의 날인과 발주기관의 증명에 있는 경우만 인정한다. (도급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 ‘시공실적증명서’는 발주기관(발급기관)에 따라 서류의 명칭(예로 준공실적증명서 등) 및 양식, 일부 기재사항 등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발주기관(발급기관)에 따라 시공실적증명서의 양식 등이 상이하더라도 해당 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이행한 시공실적의 경우, 구성원 전체의 날인이 있는 공동수급협정서와 해당시공회사의 날인이 있는 시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발주기관(발급기관)의 ‘전자 준공실적 증명서 발급시스템’ 활용을 통한 준공/시공실적증명서’는 해당시공회사(대표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 공동도급(공동이행도급)으로 이행한 시공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실적증명서에 공동수급체별 시공내용이 기재되고 구성원 전체의 날인과 발주기관의 증명에 있는 경우만 인정한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첨부된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 전체의 날인이 있고,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공실적 증명서에 구성원 전체의 날인을 하지 않고 실적증명을 받고자 하는 해당 시공회사의 날인(간인 포함)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또한, 발주기관(발급기관)의 '전자 준공실적 증명서 발급시스템 활용을 통한 준공/시공실적증명서'는 날인을 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날인 없이 원본서류 그대로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발주기관(발급기관)에서 발급 받은 시공실적증명서(전자 준공/시공실적증명서 포함)에 기재된 '회사명 또는 대표자(시공실적증명서에 기재된 공동도급사 포함)'가 준공시 대비 변경 등으로 본 사업 공고기준일 기준으로 제출한 타 서류(사본으로 첨부한 도급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포함)와 다를 경우에 '별도 사유서' 없이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발주기관(발급기관)에서 발급 받은 시공실적증명서(전자 준공/시공실적증명서 포함)에 기재된 '회사명 또는 대표자'가 준공시 대비 변경 등으로 제출한 타 서류와 다를 경우에 관련 증빙서류 또는 '별도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p.63 , p.12 9	제33조 사업수행능력 (2) 시공능력 ② 시공능력에 대하여는 발급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별표 2)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3. 시공실적 심사기준 나. 시공실적 내용 2)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가) 공동이행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규모 및 금액의 실적인정은 시공비율만큼 실적으로 인정함. 다만, 당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회사 실적으로 인정하되, 실적증명서에 공동수급체별 시공내용이	○ 발주기관과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에도 발주기관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기재되고 구성원 전체의 날인과 발주기관의 증명이 있는 경우만 인정한다. (도급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 시공실적증명서의 발주기관과 발급기관이 서로 상이할 경우(예로,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공사를 대한건설협회 또는 조달청 등에서 발급 받은 시공실적증명서, 발주기관의 증명은 없는 경우)에도 상기 ‘(2)시공능력’ 및 ‘(별표2)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을 만족하여 시공실적증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28	p.13 2~ <양식 15> 시공참여확약서 제안법인 시공 참여회사 대 표 자 (인) <양식 16-1> 투자확약서 제안법인 대 표 자 (인) <양식 16-2> 조건부 투자확약서 <양식 16-3> 투자확약서(후순위주주차입금) <양식 16-4> 조건부 투자확약서(후순위주주차입금) <양식 16-5> 추가투자확약서 <양식 16-6> 조건부 추가투자확약서 <양식 16-7> 추가투자확약서(후순위주주차입금) <양식 16-8> 조건부 추가투자확약서(후순위주주차입금) <양식 17-1> 조건부 대출확약서	○ <양식 15>의 하단부에 제안법인명, 시공 참여회사명을 기입하고 날인하는 대표자는 시공참여회사의 대표자입니다. ○ <양식 16-1> ,<양식 16-2>, <양식 16-3>, <양식 16-4>, <양식 16-5>, <양식 16-6>, <양식 16-7>, <양식 16-8>,<양식 17-1>,<양식 17-2>는 하단부에 기재된 ‘제안법인’은 확약서 제출을 위한 각 양식에 날인하는 회사명을 의미합니다.	

구 분		질 의	답 변	비 고
연 번	(제3자 제안 공고)			
		<양식 17-2> 조건부 추가대출확약서 • <양식 15> 하단부에 기재된 ‘제안법인’은 본 사업을 제안하는 ‘(가칭)XXX주식회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본 양식에 날인하는 ‘시공 참여회사’와 동일한 회사명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양식 16-1>, <양식 16-2>, <양식 16-3>, <양식 16-4>, <양식 16-5>, <양식16-6>, <양식16-7>, <양식 16-8>, <양식 17-1>, <양식 17-2> 하단부에 기재된 ‘제안법인’은 본 사업을 제안하는 ‘(가칭)XXX주식회사’가 아닌 확약서 제출을 위해 각 양식에 날인하는 회사명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